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○○·○○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입찰참가자격 부적정 등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

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○○○○본부 ○○부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구 ○○○○과)

② 울산광역시 ○구 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11. 7.부터 2018. 1. 11.까지 울산광역시 ○구
○○○○과에서 ○○·○○지구 침수피해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
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문 작성 등을 처리한 실무책임자이며, 지방○○○○
○○○은 2016. 7. 14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○구 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동 용
역의 입찰 공고 등 계약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6. 10. 5. 제18호 태풍 ‘○○’ 내습에
따라 ○○·○○지구 침수피해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2017. 8. 28. (주)
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 ○○○)외 1개사와 공동계약(계약액 1,266백만원, 계약기간
2017. 8. 28. ~ 2018. 6. 27.)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
다.

1. 입찰참가자격을 부적절하게 작성 입찰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허가·신고·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(○○과, ○○○○과)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으로 입찰공고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자격 면허를 갖춘 자가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했다.

또한 위와 같이 건설기술관리 용역업자 선정 시 무면허 업체(지역업체의 경우 면허를 제외하는 행위)와 계약체결을 사전 예방하고, 특혜제공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5. 1. 22.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(기술분야)결과 주요 지적사례(무면허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등 부적절한 계약)를 통보하였다.

그런데 위 관서(○○과, ○○○○과)에서는 2017. 8. 25. ○○·○○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공동계약으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추진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일반산업기계와 전기설비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,

○○○○과에서는 2017. 6. 23. 울산지역 소재 지역업체는 일부 면허가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에 ‘울산지역 업체는

기계부문(일반산업기계)과 전기부문(전기설비)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부분 대상에서 제외'한다고 부적절하게 검토하여 ○○과에 입찰공고를 의뢰하였다.

이에 따라 ○○과에서는 2017. 8. 25.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격 면허 등을 모두 갖추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수정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함에도, 부적절하게 ○○○○과에서 작성한 입찰공고문을 그대로 입찰공고하고, 그 결과 기계부문(일반산업기계)과 전기부문(전기설비)에 대한 면허가 없는 지역업체((주)○○○○○○공사, (주)○○엔지니어링)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(주)○○○○○○○을 주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.

2. 입찰참가자격 등을 회계부서에서 미작성
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¹⁾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았거나, 등록·신고 등을 하였거나,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,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(재무관)을 말하며, 재무과장(○○과장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(재무관)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지정받아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(○○과)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용역집행공고문 작성, 입찰참가자격 등록 접수 시 참가자격 확인, 가격입찰 공고, 개찰,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은 계약담당자(재무관)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지정받아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인 재무과장(회계부서)이 처리하여야 했으며,

발주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작성 및 평가를 처리하여야 했다.

그런데 위 관서(○○과)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용역집행공고문 작성, 입찰참가자격 등록 접수 시 참가자격 확인, 가격입찰 공고, 개찰,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회계 권한이 없는 ○○○○과에서 입찰공고문 작성, 참가자격 작성, 사전규격 공고의견 수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○구청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공동계약 운영요령, 입찰공고문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「지방계약법」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